

화순군이장정원기준제정조례안 심사 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 12. 화순군수

나. 회부일자 : 2004. 12. 10

다. 상정일자 : 2004. 12. 13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 : 총무과장 김영열

나. 제안이유

○ 도시화에 따른 농촌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급속하게 달라진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모가 작아진 화순읍 행남리 등 23개 행정리를 통합하도록 하는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3. 2. 15 공포되어 약 10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15호 이하의 법정리와의 형편성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이장정원조례를 전면 폐지하고 화순군이장정원기준조례를 제정코자 함.

다. 주요내용

- 운영상 행정리와 법정리의 형편성을 고려함 (안 제1조)
- 행정운영상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15세대 이상으로 한다 (안 제2조 제1항)
- 이장정원의 변동사항은 매년 12월 31일 세대수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세대수를 산출 적용한다 (안 제2조 제2항)
- 인구 과밀지역에 대한 분구는 분구의 필요성이 제기될 시 군의회와 협의 후 현지조사 분구할 수 있다. (안 제2조 제2항)
- 이장의 정수의 관할구역 공표는 매년 1월 5일 공표한다. (안 제3조)
- 화순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공고한다. (안 제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용태)

-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화에 따른 농촌 공동화현상으로 인해 가속하게 달라진 행정환경에 행정의 효율성을 세고하기 위해 규모가 작아진 행정리를 15호 이하는 이장성원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15호 이하인 법정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원 입법 조례안으로서,
- 이장정원조례를 폐지하고 이장정원기준조례안을 제정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1월 5일까지 이장정수를 공표하여 행정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 의결”

7. 별 입 : 화순군이장정원기준제정조례안

화순군이장정원기준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성원기준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기준) 행정리의 정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운영상 라는 1~4개의 근접한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15세대 이상으로 한다.

② 이장정원의 변동사항은 매년 12월 31일 세대수 기준으로 하되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세대수를 산출 적용한다.

단, 인구과밀지역에 대한 분구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의회의 협의를 거쳐 분구할 수 있다.

제3조(이상성원 및 관할구역 공표) 이상의 성수와 관할구역은 “별표1”의 서식에 의거 매년 1월 5일까지 공표한다.

제4조(공표방법) 화순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공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화순군이장정원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1]

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읍 면 빙	법정리명	행정리명	정 원	관할구역	비 고
합 계					